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0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신설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제8조의4, 제8조의5 및 제8조의6으로 하고,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① 영 제9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4(중전의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의5서식”을 “별지 제8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5(중전의 제8조의4) 중 “별지 제8호의6서식”을 “별지 제8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6(중전의 제8조의5) 중 “별지 제8호의7서식”을 “별지 제8호의8서식”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교육지원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2항 관련)”를 “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중 “제7조의7제1항·제8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0조의4”를 “제7조의7제1항·제7조의10제5항·제8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9조의9·제10조의4”로,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3”을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3·제8

조의4”로 하며, 같은 서식 중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5서식 및 별지 제8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8호의7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6서식(중전의 별지 제8호의5서식) 중 “시행규칙 제8조의3”을 “시행규칙 제8조의4”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재산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명 ¹⁾						
보훈급여금 등 (간호·조정수당 제외)		담당 공무원 기재				
소득 사항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이자소득	자산 조회결과 적용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원	() 원	()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자산 조회결과 적용				
기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원	원	원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자산 조회결과 적용		토지	자산 조회결과 적용	
	선 박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임목재산	자산 조회결과 적용	
	항공기	자산 조회결과 적용		어업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자동차	차량명(), 용도 [] 생업용 [] 보철용 [] 자가용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백만원), 상가보증금(백만원), 기타(백만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동 산	소(마리, 원),돼지(마리, 원)	분양권	원		
		기타가축(마리, 원),종묘(원)	조합원입주권	원		
기계·기구류(원),기타(원)		회원권	자산 조회결과 적용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사채(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1항·제7조의10제5항·제8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9조의9·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8조의3·제8조의4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에 작성한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성명을 적되, 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2) "공적이전소득"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및 그 밖의 금품을 말합니다.

[별표] <개정 2022. 2. 18.>

교육지원 신청,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및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8조의4제2항 관련)

-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4. 장애인증명서
- 5. 임야대장
- 6. 토지대장
-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9. 건축물대장
-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11. 주택가격확인서
- 12. 선박원부
- 13. 자동차등록원부
- 14. 사업자등록증명
- 15. 임대사업자등록증
- 16. 휴업사실증명
- 17. 폐업사실증명
- 18. 소득금액증명
- 19. 납세사실증명
- 20. 납세증명서
-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22. 공무원연금내역서
-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부양의무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 여부
			-		
			-		
			-		
			-		
			-		
			-		
			-		
신청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1)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4. 사업자등록증명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5. 임대사업자등록증
	3. 차상위본인부담감감대상자증명서	16. 휴업사실증명
	4. 장애인증명서	17. 폐업사실증명
	5. 임야대장	18. 소득금액증명
	6. 토지대장	19. 납세사실증명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0. 납세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9. 건축물대장	22. 공무원연금내역서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1. 주택가격확인서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선박원부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3.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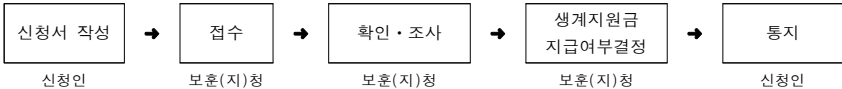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지원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확 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성명
	후유의증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부양의무자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보호실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용	장기요양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내용)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장기요양급여 내용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전화번호
	[] 재가급여 [] 시설급여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소득·재산 신고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7.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1통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4. 사업자등록증명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5. 임대사업자등록증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6. 휴업사실증명
	4. 장애인증명서	17. 폐업사실증명
	5. 임야대장	18. 소득금액증명
	6. 토지대장	19. 납세사실증명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0. 납세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9. 건축물대장	22. 공무원연금내역서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1. 주택가격확인서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선박원부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3.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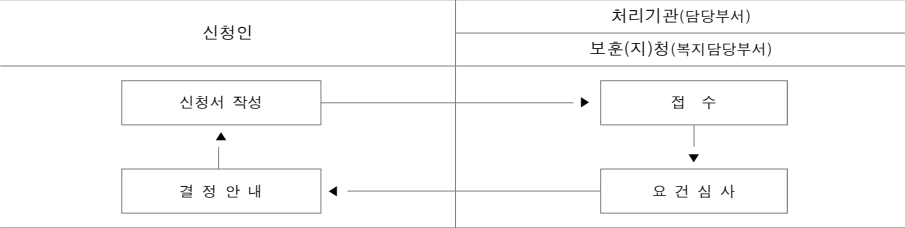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제3항 및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용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부양의무자는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심리 상태	[] 우울 [] 불안 [] 수면 [] 분노 [] 트라우마 [] 기타			
신청 내용	[] 심리상담 [] 심리검사 [] 정신건강증진 교육 [] 기타()			
신청 사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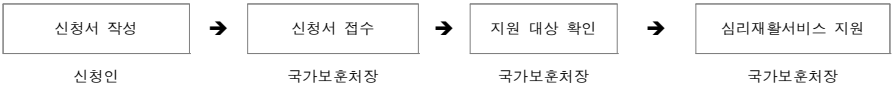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1. '심리 상태란'에는 현재 신청인의 심리 상태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내용란'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의 내용을 선택합니다(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사유란'에는 신청 배경, 상담 의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① 영 제9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통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부

	<u>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부양의무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제8조의3(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u>별지 제8호의5서식</u> 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4(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 ----- ----- ----- ----- ----- <u>별지 제8호의6서식</u> ----- ----- ----- ----- ----- -----

1. ~ 7. (생 략) ②·③ (생 략) 제8조의4(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u>제8호의6서식</u>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5(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 영 제15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u>별지 제8호의7서식</u>에 따른다.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 ----- ----- ----- ----- <u>제8호의7서식</u> ----- ----- ----- ----- -----. 제8조의6(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 ----- ----- ----- ----- ----- ----- <u>별지 제8호의8서식</u> ----- -----.
--	--